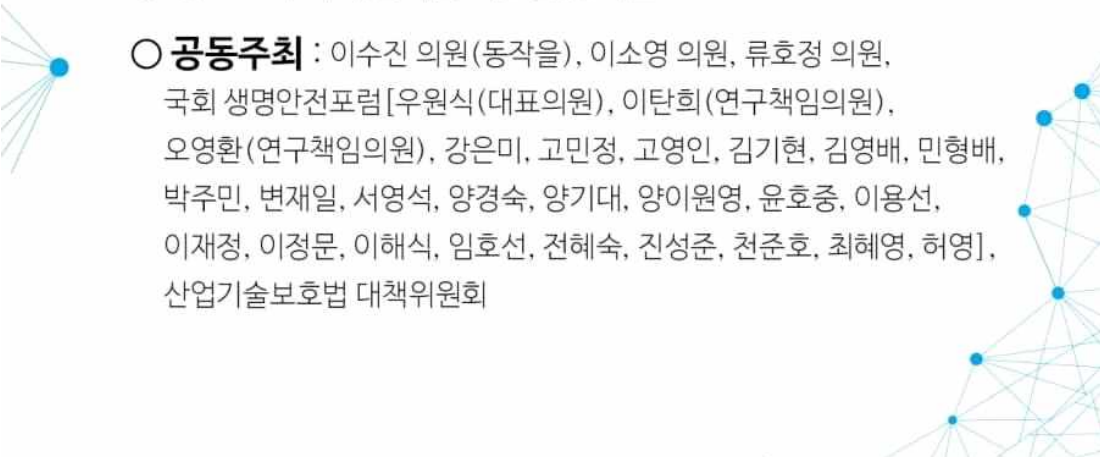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이수진 의원(동작을), 이소영 의원, 류호정 의원,  
국회 생명안전포럼[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해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및 순서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반올림 황상기	3
사 회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 제	
1.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정방향	17
임자운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반올림	
2.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취지와 2019년 개정법의 평가	3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토 론	
1. 산업기술보호법이 위헌인 이유	57
오민애   법무법인 율림 변호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대리인	
2.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보전에 미치는 영향	71
최상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산업기술보호법과 법개정에 대한 의견	83
김창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과장	
4. 산업기술보호법과 법개정에 대한 의견	85
김용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부 록	
1. 국가핵심기술	89
2.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	107





# 인 사 말





## 인 사 말



이 수 진

(동작(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 불 어 민 주 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기꺼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와,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우원식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산업기술보호와 국민 알권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존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정보 비공개에 악용되면서, 그간 재개정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비공개’와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 공개 금지’ 조항 등은 대기업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쓰여 현재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건강 권이나 국민의 필수적인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정보는 마땅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여러 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를 보다 심도 있게 경청하는 단계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러한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할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오신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님과 오픈넷 박경신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점에서 의견을 주실 토론자 여러분께 존경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 사 말



우 원 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 불 어 민 주 당

반갑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우원식 의원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국회는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술의 보호, 육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여야 이견 없이 본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관련한 여러 안전을 병합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생략된 채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와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 공개 금지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두 사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개정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진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소송장으로 가져가 자신들의 주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산재입증자료가 국가핵심기술로 막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만 더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피해자만 5000여명이 넘는 가슴기살균제 사건이나 최악의 화학사고로 꼽히는 구미 불산 유출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입증책임 부여와 폭넓은 알권리 보장은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NO DATA, NO MARKET’은 기업 활동의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로 묶여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공개가 거부된다면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기업의 이익에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 공개 금지 조항은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 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칫 기업의 고발과 소송이 남발되고, 기술유출로 인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자 외에 공익적 목적의 시민들을 억울한 사법적 처벌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의 기반 위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잘 청취해 필요한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이수진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과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애써주신 반올림과 발제를 맡아주신 임자운 변호사님, 박경신 교수님을 포함한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11.19.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우원식

## 인사말



이 소 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와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지만, 법 조항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일체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에 따라(제14조 8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입은 생명·건강의 피해에 대한 정보까지도 ‘산업기술 유출 또는 침해 행위’로 해석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대전환 계획인 한국판 뉴딜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사람을 위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과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해당 법률의 문제와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가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한계점과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보고,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와 개정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협력하여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1.19.  
국회의원 이소영

## 인 사 말



류 호 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 의 당

**산업기술보호법이 삼성보호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지난해 2월 발효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보호법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반올림과 함께 국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내용,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협받는 노동 건강권 활동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이후의 영향 등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은 통과되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는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비공개 대상입니다.

제14조의8(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은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4조(비밀유지의무)는 비밀유지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환경이나 산업재해 관련 직업병 인정을 위한 정보수집이 한순간에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노동환경에 관한 공익적 문제를 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의 출발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며 제정 취지에서 삼성전자를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강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직접 삼성 피해자 소송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공익적 외피를 쓰고 입법화되어 적극적인 감시와 문제 제기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는 비공개도 문제입니다.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의 첫출발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언론인이나 일반 시민은 출입 자체가 불가하고, 회의록도 상임위 전체회이나 본회의 등에 비해 늦게 공개되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임위 제도 개혁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 방향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노동자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9일(목)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 인사말

황 상 기  
삼 성 반 도 체 백 혈 병  
故 황 유 미 님 아 버 지  
반 올 림

안녕하세요. 유미 아빠 황상기입니다.

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니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증거를 내라고 해야지, 피해자에게 증거를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 달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 달라고 재판까지 해서, 받아냈습니다.

근데 재판으로 안되니까 이제 삼성 뜻대로 법을 바꿨습니다.

국가핵심기술 관련만 있으면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다 국가핵심기술이라면서, 그럼 반도체 공장 피해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산업기술 공장에 대해 알리면 처벌받게 해놓으면, 공장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 죽고 가정이 파탄나도 쳐다만 보란 말입니까?

반도체 전자산업 중에 산업기술 아닌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야지, 산업기술인지 따져보고 가만있으란 말입니까?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감옥가는 사람 없고, 벌금 몇 백만원 내고 끝내면서, 공장 위험 알리면 몇 년씩 감옥가게 하는 법이 제대로 된 법입니까?

20대 국회가 잘 몰라서 통과시켰다고 했으니, 21대 국회가 잘못된 법을 해결해 주십시오.

노동자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는 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발 제





## 발 제 1

#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정 방향

임자운 | 반올림 활동가, 법률사무소 지담

## 1.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주요 경과

### 2015 - 2016

- 고용노동부, 삼성반도체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작측 보고서1> 비공개 결정
- 반올림, (화성·기흥)<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온양)<작측 보고서> 공개 소송
- 고용노동부·삼성,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라서 공개되어선 안된다” 주장

### 2017. 10 - 2018. 2.

- 서울고법, 삼성반도체(화성·기흥)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등 공개 판결
- 대전고법, 삼성반도체(온양) <작측 보고서> 공개 판결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지침 개정

### 2018. 3. - 2019. 10.

- 고용노동부, 삼성반도체(화성·기흥) <작측 보고서> 공개 결정
- 삼성, 산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2) 및 행심위에 노동부의 공개결정 취소 청구
- 산자부, 삼성반도체 <작측 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판정
- 윤한홍·곽대훈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제9조의2<sup>3</sup>), 제10조의2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2)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6항

#### 신설4)

- 중앙행심위, 고용노동부의 삼성반도체 <작측보고서> 공개 결정 취소
- 반올림, 중앙행심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 삼성,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선 안된다” 주장
- 윤영석·장석춘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제9조의25), 제14조 8호6) 신설)
- 이종구 의원(국회 산자위 위원장), 10개 개정안을 통합하는 대안 발의
- 국회 본회의, 이종구 의원의 통합 대안 가결 (210명 재석, 206명 찬성)
- 산자부, (보도자료)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제9조의2, 제14조 8호 누락)
- 삼성, “작측보고서 공개 논란을 계기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사실상 입법적 해결”7)

#### **2019. 11. - 현재**

- 반올림, 기자회견. “안전·생명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 생명·안전·알권리 침해 산기법 규탄”
- 국회 토론회8).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 뉴스, ‘삼성보호법’ 사태 심층 보도9)

3)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다.

4) 제10조의2(국가핵심기술 정보의 사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2019. 9. 16.자 삼성디스플레이 준비서면, 2019. 10. 23.자 삼성전자 준비서면

8) 우원식·신창현·윤소하 의원 공동 주최. 2020. 1. 14.

- 환경안전보건 관련 4개 학회<sup>10)</sup>, 공동입장문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철회 촉구”
- 국회의원 15인<sup>11)</sup> 기자회견.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산기법 대책위, 산기법 제9조의2, 제14조 8호 등 헌법소원 제기 (2020. 3. 9.)
- (2020. 8. 4.) 이수진(비) 의원 등 14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 (2020. 10. 13.) 고민정 의원 등 18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 2.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문제점

### 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예외없는 비공개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이기만 하면 예외없이

9) JTBC 뉴스룸(2020. 1. 10.), MBC 스트레이트(2020. 2. 10), KBS 9시 뉴스(2020. 3. 20).

10) 한국산업보건학회, 대한건설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2020. 2. 20.

11) “이 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계 부처가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대한 해법 마련도 고민하겠습니다.” 2020. 2. 24. 국회의원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강병원.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절차 면에서도 제한이 없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소송 절차 및 국회 감·조사 절차 등에서도 이 조항이 주장될 것이다. 법 문언상 수범자는 ‘공공기관’이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이 조항을 앞세우며 관련 정보의 은폐를 정당화할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란 대체 무엇일까.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방식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개정 산기법은 그 기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면서, 그 관련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관련 정보의 공개 논란에 엮이기 싫어하는 공공기관이나 그 정보의 비공개를 바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꽃놀이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보자. 삼성 반도체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은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 형성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 기술」등이다. 이를 이유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고(그래서 공개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산자부는 이미 삼성의 요청에 따라 삼성 기흥·화성·온양·탕정·평택·아산·천안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하기도 했다.

위 보고서들은 모두 사업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알수 있는 자료들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혹은 각각의 측정·진단·감독 기관들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하는 자료들이다. 종래 이 자료들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와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사업장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정보공개법과 관련 판례들이 면밀하게 따져온 정보 공개 기준들은 모두 무력화되고<sup>12)</sup>,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이유불문 비공개다. 설령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인해 사람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게 된다 해도, 마찬가지로.

물론 단서 조항이 있긴 하다.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개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단서는 없다. 또한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산자부 장관의 동의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구색맞추기용 단서 조항으로 보인다.

## 나. “산업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공개 금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8. 20. 개정)

1. ~ 7. 호 생략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종래 산업기술보호법이 엄격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모두 산업기술의 취득 혹은 사용·공개 등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등이 개입된 경우였다.<sup>13)</sup>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제8호는 그러한 의도나

12)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3)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

목적 없이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추가했다.

정보의 취득 경로에 제한을 두기는 했다. 그런데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현행 대통령령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고 했다(동 시행령 제19조의2).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대통령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 ‘경로’에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절차나 산재 소송 절차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절차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그 이유로 밝혀졌던 내용이기도 하다.<sup>14)</sup>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라는 법 문언도 그 해석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수천개다. 그 기술이 “포함된 정보”의 범위는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위험이 너무 크다. 결국에는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이 실질적 해석 주체로 나설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

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증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증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14) (2018. 11. 23. 윤영석 의원 법안 제안이유)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법률은 더욱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위축효과’ 때문이다.<sup>15)</sup>

제8호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36조 4항)<sup>16)</sup>. 해당 사업장은 **제8호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수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수사기관 등은 그러한 요구를 받으면 조사·조치를 해야 한다(제15조).<sup>17)</sup> 해당 사업장은 제8호 행위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제22조의2).<sup>18)</sup>

즉 이 조항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공익적 활동을 민·형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장 내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그 유해성을 알리려 할 때, 사업주는 일단 그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5)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16)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다.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확대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의 해석범위 역시 모호하다. 동법 시행령(제36조의2)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두가지를 정하였으나, 이 또한 모호하다.

“부당한 목적”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누설(외부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36조 6항).<sup>19)</sup> 결국 위 제14조 8호(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3.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검토

### 가. 이수진 의원 등 14인 발의 법률안(2020. 8. 4. 발의)

“현행법 체계상 산업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제14조 제8호의 개정을 제안했다.

---

19)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7. (생략)</p> <p>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u>〈단서 신설〉</u></p>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 ----- 행위. 다만, <u>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법 개정의 방향은 산기법 대책위의 문제의식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사용·공개’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산기법은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를 통해 그 취득 경로부터 틀어막았다. 따라서 제9조의2를 그대로 둔채 제14조 제8호만 개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가 크다.

나아가 위에서 지적한 제8호 본문의 ‘명확성’ 문제를 그대로 둔 것, 추가하고자 하는 단서 규정이 예외적 공개 사유로 ‘생명권’, ‘건강권’ 보호만을 정한 것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산기법 대책위는 2020. 8. 27.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나. 고민정 의원 등 18인 발의 법률안(2020. 10. 13. 발의)

“현행법에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적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경우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 내지 공개하더라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고, 해당 행위자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제14조 제1의2호 신설을 제안했다.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략)</p> <p>〈신설〉</p> <p>2. ~ 8. (생략)</p>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u></p> <p>2. ~ 8. (현행과 같음)</p>

이 법안에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sup>20)</sup> 이미 ‘삼성보호법’이라는 오명이 붙여진 법에 굳이 그런 이름을 또 붙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20) 2020. 10. 7. 고민정 의원 보도자료 <고민정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법 개정의 방향도 산기법 대책위의 문제 의식과는 정반대 쪽을 향하고 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대상기관의 동의없는” 산업기술 사용·공개를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어떤 기술의 위험성을 공익적 목적으로 알리려 할 때에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비슷한 이유로 이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제14조 제8호 보다 더 문제적인 조항으로 보인다.

산기법 대책위는 2020. 10. 19.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 4.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1) 위에 문제조항으로 열거한 제9조의2, 제14조 제8호, 제34조 제10호 모두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중 특별히 비공개 대상이 되어야 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혹은 제7호<sup>21)</sup>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용·공개 역시 이미 산기법에 마련된 비밀유지명령 제도(제22조의4)를 통해 법원이 그 목적과 필요 범위를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삭제가 아닌 개정으로 간다면, 먼저 제9조의2의 경우, 세 가지 방향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원칙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 아니라(“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할 필요성이 과

---

21)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연 있겠는가), 그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결국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자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테면 ‘국가핵심기술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sup>22)</sup> 정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국가핵심기술의 구체적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sup>23)</sup> 등의 기준들을 중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원칙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적 공개 대상 정보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최소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라면<sup>24)</sup> 설령 그것이 국가핵심기술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개인 정보보호, 환경권 등 국가핵심기술의 운용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법익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들은 공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정보의 공개범위를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sup>25)</sup>”,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이다(산기법 제7조 제3항). 산업기술보호법은 동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지식·경험 등을 요구할 뿐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위생, 노동건강권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문성도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산자부는 산기법

22)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정의 규정(제2조 제2호) 참조.

2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정의 규정(제2조 제2호) 참조.

24)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5)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특허청장

제34조에 근거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비공개 정보로 삼고 있다.<sup>26)</sup>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여부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판단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했다(동법 제12조). 여기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판단을 부분적으로나마 특정 기구에 맡겨야 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보다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에 맡기는 것이 훨씬 타당해 보인다.

3) 다음으로 제14조 제8호 및 제34조 제10호를 개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용·공개 및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상 정보(“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의 범위부터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제14조 제8호의 경우, “산업기술이 포함된” 모든 정보의 사용·공개를 제한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는가.

또한 제14조 제8호와 동 시행령 제19조의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제14조 제8호의 전단 부분은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된다. 이렇다면 왜 하위법령에 위임했는지 모르겠다. 애초부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사용·공개를 제한할 목적이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고, 법률 문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다.<sup>27)</sup>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소송을 통해 취득한 산업기술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정보를 그 소송 외에서 사용·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사용·공개까지 금지하는 것은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 목적 외의 사용·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를테면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공개는 가능해야 한다.

26) [https://www.motie.go.kr/motie/gov\\_info/gov\\_openinfo/gov\\_closeinfo/gov\\_closeinfo.jsp](https://www.motie.go.kr/motie/gov_info/gov_openinfo/gov_closeinfo/gov_closeinfo.jsp)

27) 제14조 제8호 전단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 발 제 2

---

#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취지와 2019년 개정법의 평가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산업기술보호법 =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규제**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 = 산업기술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제14조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규제 = 국가핵심기술의 소유권 해외이전을 막기 위한 규제 (제11조 등)

2019년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 제14조의8: 산업기술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의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의 대국민 공개를 제한하는 규제

### 〈논점〉

1. 제14조의8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규제의 입법 취지에 화합하는가?  
(헌법상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의 비례성 문제)
  2. 제9조의2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규제의 입법 취지에 화합하는가?  
(헌법상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의 비례성 문제)
  3. 제9조의2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법정주의를 위배하는가?
-

## I. 기존 산업기술규제의 취지 개정법 제14조의8에 대한 평가

산업기술보호법 중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는, 타국이나 타기업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는 등 선진 각국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자극을 받았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이 민사구제만을 규정했던 것을 형사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영업비밀보호법”, 이하)이 형사구제를 포함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방지 강화노력은 달랐다. 즉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에만 적용되어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누설만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영업비밀보호법 등 현행법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여 국공립 연구소, 공공기관의 산업기술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04. 11. 9. 의원 발의되었다. 이때 영업비밀보호법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한다는 의식이 강하여,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를 차용하여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1) 비공지성, (2) 경제적 가치성, (3) 비밀관리성을 두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006. 10. 27. 현재와 같이 보호대상이 된 “산업기술”의 정의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등을 제외하고, 보호대상을 산업기술 전반으로 넓히되, 대상 기술을 지정, 고시, 공고하는 등 열거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을 정의한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고, 2007. 4.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민간연구소,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정, 고시, 공고를 하면 영업비밀보호법에 대응되는 형사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민간의 영업비밀은 기업 간 또는 기업-직원 간의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비밀이 유지가 되는 반면, 공공기관 들의 경우 엄밀한 계약 상의 비밀유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으로 공공기관 및 연구소의 인력들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제1호). 이와 함께 법의 집행과 관련되어 산업기술을 접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제1호-9호). 이에 따라 영업비밀보호법이 처벌하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죄에

유사한 죄목이 산기법 제34조 위반죄의 형태로 제14조에 포함되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산업기술보호법이 영업비밀보호법에 대응되는 규제를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광고·인증하는 . . . 기술을 말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가치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취득, 이용, 공개	제14조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2조 3.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비밀유지 의무 위반	제14조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2조 3.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알면서 취득, 이용 및 공개	제14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	제2조 3.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 . . 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 . . 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취득 후에 알면서 이용 및 공개	제14조 3. . .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2조 3.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 . . 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비밀유지의무위반)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 . . 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b>중과실</b> 취득, 이용 및 공개	제14조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	제2조 3.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 .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비밀유지의무위반)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 . .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b>취득 후 중과실로</b> 이용 및 공개	제14조 4. . .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2조 3.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 . .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비밀유지의무위반)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 .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b>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인수 합병</b> <생략> 제14조 5, 6, 6의2, 7		
제14조 6의3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자의 기한 후 삭제거부]		
2019년 개정법	제14조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b>대통령령</b> 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고민정 안	제14조 1의2.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그러나,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 특히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 취득, 이용, 공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발전 자체에 커다란 해가 될 수 있다. 비밀성이 없는 정보들도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기술정보의 확산을 저해하여 산업발전에 해가 된다. 예를 들어 폴더폰 기술이 산업기술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폴더폰 완제품 메이커에 경첩을 납품하는 업체가 납품경험을 살려 언론에도 잘 알려진 정보(예를 들어 ‘경첩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를 이용하여 새로운 경첩을 만들어 다른 폴더폰 업체에게 제공했다고 생각해보자.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경첩납품업체의 이와 같은 행위 역시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처벌할 수 있다.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더 많은 생산자들이 나오고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식의 전파를 통해 산업발전을

담보하려는 대표적인 법이 특허법이다.<sup>1)</sup> 그런데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특허로 공개된 기술 즉 어느 업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정부가 산업기술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관계나 기타 법을 통해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업체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리어 국가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지정한 기술정보를 업체나 개인이 다룰 동기가 더 저하되고 산업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의 촉매가 되었던 소위 “경제스파이법”(미연방법전 90장, 제1831조 -제1839조)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839조 제3항은 위 법상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1 소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2 해당 정보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적법한 수단으로 얻어서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산업기술을 영업비밀과 별도로 개념정의하고 있는 우리 산업기술보호법과 달리,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과 거의 유사하게 보호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그외 일본, 중국,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별도로 국가가 정하여 영업비밀처럼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sup>2)</sup>

영업비밀보호법상 비밀성은 . . . , 정보가 간행물을 포함한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비밀성이 없다는 것은 매체에 실리는 등의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비밀성이 없는 기술을 단순히 법령의 고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이미 공개되어 버린 기술의 경우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취득, 사용, 공개(제14조 제1호, 특히 공개의 경우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생각하기 어렵고, 제 14조 제2호에서는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의 유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비밀성이 없는 기술이라면 위 조항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은 비밀, 비공지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비밀성이 없는 산업기술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새기게 되면, 이는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sup>3)</sup>

1) 특허법 제87조 제1항

2)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9-22, 2019년12월

즉,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정보는 영업비밀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비밀성이 있는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위헌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제4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비밀보호법에 우선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기술보호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언상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더욱 더 위헌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이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박제조기술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된 2011년 사례가 있다.<sup>4)</sup> 피고인은 "비공지성" 등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임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산업기술은 영업비밀과 다른 근거로 구성된 개념임을 천명하고 이와 같은 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비공지성 또는 가치요건 또는 외부 표지 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산업기술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술 중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항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sup>5)</sup>

3) \_\_\_\_\_, 정보법학회 2011년7월 발제문

4) 부산지방법원 2009노10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삼성중공업은 드릴쉽 상부구조 설계기술의 개발용역을 의뢰한 네덜란드 그렌랜드사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드릴쉽을 건조하고 있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드릴쉽을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하였다. 피고인은 ABS(미국선급협회)의 선급검사관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 동료 선급검사관으로부터 받은 USB 메모리에 삼성중공업의 드릴쉽 설계기술 파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옮겨 유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주로 일반적인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 기술상의 정보이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같이 공개된 기술 역시 보호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은 ‘국가핵심기술의 속성상 영업비밀에 한정될 수 없고 공개된 기술을 포함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sup>5)</sup> ‘국가핵심기술’이 공개된 기술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아래에 다시 말하겠지만, 국가핵심기술(national critical technologies) 규제는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을 막으려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와 같은 공개된 기술정보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핵심기술규제와 산업기술규제의 목표와 내용은 다른 것이고 전자를 근거로 후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현재 산업기술규제가 비밀성이 없는 정보에도 적용된다면 전세계에 없는 유일무이한 법으로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들이 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2019년 개정 이전의 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2가지 행위를 규제대상의 핵심으로 보았는데 하나가 절취, 기망 등의 “부당취득행위”이고 다른 하나가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당취득행위’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모두 그 자체로 가벌성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공개된 정보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저항이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비밀성이 없는 정보에 대한 ‘부당취득행위’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성립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여기에 2019년 개정법의 제14조의8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미 위헌논란이 있는 법률에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더욱더 위헌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제14조의8은 유일하게 부당취득행위도 없고 비밀유지의무 위반도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당취득행위나 비밀유지의무가 성립 불가능한 ‘공개된 정보’에도 그 이용에 제한이 걸린다. 공개된 특허를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여 생산행위를 할 경우 제공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공개된 정보’가 아니

5) 전계서, 부산지방법원. 헌법재판소는 다른 이유로 위헌을 선언하였다. 헌재 2013. 7. 25. 2011헌바 39, 공보 제202호, 918 [위헌]

6) 한국산업정보보호학회, 기술유출방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04.10, 77면

라 할지라도 비밀유지의무없이 합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함에 있어 규제를 받게 된다. 원래 초강력접착제를 발명하려던 연구에서 우연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파생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초강력접착제 연구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회사 3M은 2012년의 우리나라에서라면 포스트잇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를 제공한 자가 “초강력접착제 연구”목적으로 제공했다고 증언하면 제14조의8의 위반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는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즉 힘없는 개인이 긴절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부나 기업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탁할 때 특별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정부나 기업이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정보가 아닌 산업정보에도 이와 같은 통제권을 정보수집자(정보주체가 아니고)에게 부과하려는 시도가 “정보소유권”이라는 구호 아래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심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 한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sup>7)</sup> 이번에 14조의8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마도 세계최초의 산업정보에 대한 정보소유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절취, 기망 등의 부정취득행위가 아닌 적법한 통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추후 이용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에게 ‘정보 제공의 목적’을 소급적용하여 목적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원래 영업비밀이거나 영업비밀과 유사한 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산업기술보호규제의 입법목적은 성취하는 적정한 방법도 아니다. 산업기술보호규제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합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였다면 별다른 비밀유지의무도 부과되지 않은 사람들이 산업정보를 자유롭게 실험, 개선, 연구할 때마다 해당 정보의 제공자와 제공목적에 대해 통보나

---

7) Position Statement of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of 26 April 2017 on the European Commission’s “Public consultation on Building the European Data Economy”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II. 국가핵심기술 규제의 입법취지와 9조의2에 대한 평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규제의 증추를 이루는 national critical technologies라는 개념은 미국과 일본에서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에 있어 자국기업들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기술인력의 취업, 또는 기술소유기업의 인수합병 등 합법적인 방식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외국기업들에게 해당 분야에서 우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들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개념이며<sup>8)</sup>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국가핵심기술 보호 규제들은 이와 같은 일견 합법적이었던 거래들을 공격 통제 안으로 포섭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9)</sup>

2019. 8. 개정 전까지 산기법 중에서 국가핵심기술 규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보안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수출을 제한하며, 부정확한 방법이나 목적이 개입된 기술의 해외수출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OLED 디스플레이 장비’ 및 ‘500kV급 전력케이블 시스템’ 관련 사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이전에는 자유롭게 수행되던 해외와의 기술거래, 인수합병, 인력이동이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된다. 기술에 대한 소유권 즉 지적재산권의 해외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권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은 일반에게 의무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정보의 공유가 아무런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산업기술보호법 하에서는 이 소유권을 해외기업에게 이전하는 것도 규제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8) Identifying Critical Technologies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the Federal Effort, *Journal of Forecasting*, *J. Forecast.* 22, 113-128 (2003)

9) 김민배, 박준석, 이윤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효율적 통제방안”, 국가정보연구 제2권1호 (2009),

이에 대한 저작권을 해외기업이 인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핵심기술규제의 가장 중추적인 조항은 바로 제11조와 제11조의2에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제36조가 주 별칙조항인데 여기서 처벌되는 행위들은 주로 제1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인데 제14조에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금지 행위들은 대부분 제11조와 제11조의2의 의무위반을 매개로 정의되어 있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국가핵심기술규제 조문들은 기술의 ‘매각’, ‘이전’,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인수’, ‘합병’ 등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	규제행위	취득금지대상	달성되는 공익
국가핵심기술규제 (기존 산기법)	공개+비공개 지재권	소유권이전	해외	국익보호
산업기술 규제 (기존 산기법)	영업비밀 등 비공개지재권	정보누설	소유자 외 전세계	영업비밀의 강화된 보호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정보누설	소유자 외 전세계	영업비밀보호
9조의2 국가핵심기술규제	공개+비공개 지재권 중 공공기관 제출정보	정보누설	국민	???

바로 여기에 제9조의2의 문제가 있다. 9조의2는 국민에 대한 정보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는 발생할 수 있고 노동쟁의

도 발생할 수 있으며 탈세, 뇌물 및 각종 비리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핵심기술로 산자부가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정보공개청구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국회가 별도의 제한 사유를 만들 수도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법은 타법의 제한 사유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정보공개청구법 제9조제1항제1호). 그러나 우선 국회가 정보공개청구로부터의 제한사유를 만드는 것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아래 보론 참조).

국가핵심기술규제는 그런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미 법적으로 공개되는 기술인 특허, 사실상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저작권, 상표권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때에 따라서 ‘비공개’가 의미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누구나 다 아는 반도체공장의 위치도 정보공개청구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를 비밀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법을 운용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면 공개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매각, 이전, 인수, 합병을 통제하려고 했던 제11조와 제11조의2의 원래 입법취지가 파탄나기 때문이다.

또 제9조의2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제9조의2가 통제하려는 것은 행정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산업적 기밀성을 지닌 정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공공기관들 중에 연구소같은 곳은 스스로 개발한 기술의 경우 산업적 기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은 산업기술규제와 같은 형식의 규제로 보호해야 하며 실제로 산업기술의 정의에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산업적 기밀성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그런 사례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재해소송의 거의 유일한 자료임에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등이다.

### III.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규제의 알권리에 대한 기본권 침해법정주의 위반

#### 1. 기본권침해 법정주의

백보를 양보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면책하는 것이 헌법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규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누가 정의하는가의 문제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또다른 특성은 다른 법률과 달리 스스로 비공개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산자부 장관이 비공개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법 제12조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이들 정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부터의 면제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10)</sup> 그러나 제9조의2는 국가정보원법과 달리 행정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함으로써 비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스스로 비공개대상을 명시하거나 법률에 위임한 명령이 비공개대상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 법률이나 명령이 다시 이를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의 헌법적 문제는 명약관화하다(아래 보론2 참조).<sup>11)</sup> 행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로 지정하는 것들도 모두 정보공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보공개청구법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정당한 기밀성이 있어서 비밀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기관장들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지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결국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라는 대의명분은 정보공개청구법의 의의는 소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공개청구법은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1항1호에 대응되는 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특정[될 것]’을 요구함은 물론 **(A) 그 법이 비공개 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하지 않거나 (B) 비공개되는 정보의 기준과 종류를 특정한 경우**에만 정보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특히 2009년 이후에 시행된 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법 조항을 명

1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11) 박경신, 정보공개청구법 "타 법령 비공개지정"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 제49호, 2015년

시할 경우에만 정보공개청구법 상 면제효과를 획득하도록 한정하고 있다.<sup>13)</sup> 즉 비공개 여부에 대해 재량이 없을 정도로 특정 정보를 직접적으로 비공개지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특정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산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정할 수 있어 문제인 것이다.

## 2. 산기법의 국가핵심기술규제에 대한 평가 : 보안업무규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현 법체제상 행정기관이 비공개정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4조<sup>14)</sup>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비밀지정을 할 수 있다. 미국 정보공개청구법도 위에서 실시했듯이 ‘타법령 비공개 지정’에 의한 면제는 법률의 구체적인 비공개지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국방 외교와 관련되어서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비공개지정이 가능하고<sup>15)</sup> 이와 같은 비공개지정 자체는 각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행하여진다.<sup>16)</sup>

첫째 국방 외교와 같이 긴밀하지 않은 영역에서 즉 산업적 영역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를 재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보안업무규정 하의 비밀지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라는 협소하고 상대적으로 명확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sup>17)</sup> 이에 비해 산업기술보호법 하의

12)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b)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matters that are-- . . . (3) specifically exempted from disclosure by statute (other than section 552b of this title), provided that such statute (A) (i)requires that the matters be withheld from the public in such a manner as to leave no discretion on the issue, or (ii) establishes particular criteria for withholding or refers to particular types of matters to be withheld; and (B) . . .

13) (B) if enact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OPEN FOIA Act of 2009, specifically cites to this paragraph.

14)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I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I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15)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b)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matters that are- (1)(A) specifically authorized under criteria established by an Executive order to be kept secret in the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or foreign policy and (B) are in fact properly classified pursuant to such Executive order;

16) Executive Order 13526 (President Barrack Obama)

17) 보안업무규정 제2조의 제1호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

국가핵심기술의 정의인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은 너무 불명확하다. 해석 상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 .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될 수 있어 너무 폭이 넓을 수도 있다. 물론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의 안전보장”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의 국가안보가 보안업무규정 상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이며 산자부가 과연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법문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고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비공개기준으로서 타당하다는 실체적 평가도 받은 바 있다.<sup>18)</sup> 이에 비해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를 이루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다” 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도리어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하는 문구들<sup>19)</sup>에 대하여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의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20)</sup>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준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하라고 한 법은 더욱더 위헌을 면하기 어렵다.

18) 다음과 같은 법률에 대해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법 상의 거부사유가 되는 ‘타 법령’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선고 2013.1.24. 2010두18918. 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광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2013. 7. 25. 2011헌바39)

둘째, 행정기관에 의해 비공개지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의 자의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미국의 비밀지정에 대한 행정명령 내에는 비밀지정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어<sup>21)</sup> 국민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이는 전세계 500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천명한 2013년 국가안보와 알권리에 대한 츠와네 원칙 (The 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Declared in Tshwane, South Africa)의 11조-14조가 요구하는 바이기도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산자부의 지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참고로 보안업무규정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2항에 따라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공개에 대한 것이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공개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sup>22)</sup> 이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지정권자인 산자부의 결정에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산자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 외교 상의 비밀지정은 그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뤄지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비밀지정은 산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적 필요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정권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국민의 기

21) Executive Order 13526 (President Barrack Obama) **Sec. 1.8. Classification Challenges.** (a) Authorized holders of information who, in good faith, believe that its classification status is improper are encouraged and expected to challenge the classification status of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b) of this section.

(b) In accordance with implementing directives issued pursuant to this order, an agency head or senior agency official shall establish procedures under which authorized holders of information, including authorized holders outside the classifying agency, are encouraged and expected to challenge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that they believe is improperly classified or unclassified. These procedures shall ensure that: (1) individuals are not subject to retribution for bringing such actions; (2) an opportunity is provided for review by an impartial official or panel; and (3) individuals are advised of their right to appeal agency decisions to the Interagency Security Classification Appeals Panel (Panel) established by section 5.3 of this order. (c) Documents required to be submitted for prepublication review or other administrative process pursuant to an approved nondisclosure agreement are not covered by this section.

22)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권이 자의적 행정권에 의해 재단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개선책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규제와 국가핵심기술규제로 나눌 수 있다. 2019년 개정 이전의 산업기술규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보유 정보 및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으면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 제14조의8은 위와 같은 법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부당취득행위나 비밀보호의무가 없는 정보이용이나 공개에 대해서 제공목적이라는 불분명한 한계를 두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산업지식의 전파를 저해한다.

역시 2019년 개정 이전의 국가핵심기술규제는 국가경제에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기술의 소유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 제9조의2은 위와 같은 법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기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적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수결로 결정되는 법률에 의해 자의적으로 재단될 수 없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 노동쟁의, 탈세, 뇌물 및 각종 비리는 일어날 수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로 산자부가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산업적 기밀성이 높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차단되도록 한 것은 위헌적이다.

더불어서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규제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산업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하도록 하여 알 권리에 대한 기본권제한법정주의에 반한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치유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제도도 없으며 상대적으로 명확한 ‘국가안전보장’을 기준으로 비공개를 지정하는 보안업무규정과 달리 경제적 이익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비공개여부가 결정되어 더욱 기본권제한법정주의에 반한다.

제14조의8과 제9조의2는 각각 산업기술규제의 입법목적이나 국가핵심기술규제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도 아니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각각 산업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고 국민의 감시권리를 침해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보론: 알 권리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정해지는가, 입법자에 의해 정해지는가?<sup>23)</sup>

정보공개청구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조문 만으로 보면 국회가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한 것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알 권리가 별도의 입법 없이도 다른 기본권처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법이 위와 같은 타 법령에 의해 비공개지정을 인정하고 산기법 제 9조의2가 비공개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다룰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 권리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거나 입법을 통해서만 보장되는 어떤 권리라면 알 권리의 보호범위는 다수결주의를 따르는 국회에 의해 확정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법이 ‘타 법령이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만드는 타 법 그 자체로 절대적이 된다.

우리 헌법은 알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 초기 결정인 임야대장 및 토지조사부의 열람불복사건(헌재 1989.9.4. 88헌마 22)에서 알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

23) 박경신, 정보공개청구법 "타 법령 비공개지정"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 제49호, 2015년

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거나 입수 또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 라고 하여 소위 “알 권리” 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위의 서술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를 ‘자유권적 요소’로 즉 소극적으로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서 ‘알 권리’를 ‘청구권적 요소’를 포함하는 이중적인 내용의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로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알 권리”의 법적 성질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다시 견해가 갈릴 수 있지만,** 본건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비록 공문서 공개의 원칙보다는 공문서의 관리·통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기기는 하지만 “정부공문서 규정” 제36조 제2항이 미흡하나마 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곧바로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형태로 입법자의 결단 또는 최소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기구에 의한 결단이 필요했는지를 애매하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알권리의 청구권으로서의 본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통해서만 구체적 권리로 된다’는 견해, ‘정보공개청구권으로써의 알권리를 실정법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결여된 경우에도 사법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sup>24)</sup>

24) 최인호,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2008년 6월, 한국공법학

김창조는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판시에 주목하며 알 권리가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입법 없이도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정보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즉 알 권리의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 권리로써 파악하고 있다.<sup>25)</sup>

최인호 역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에 근거하여 인정해 온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달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 . . 알 권리의 직접적 효력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것이 큰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정보자유법이 제정된 이유는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보다는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창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입법이 없더라도 알권리가 보장되어온 체제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sup>26)</sup>

이에 따라 김창조는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며 입법적인 개선책까지 제시한다.

비밀과 관련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들(각주19: 헌재 1997.1.16.,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 (병합); 대판 1996.10.11., 94누7171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회, 547-548쪽; 정하명, “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2014년 2월, 한국공법학회, 35쪽; 김창조 보고서, 24쪽

25) 김창조 보고서, 24쪽

26) 최인호, 547-548

사례)) 을 참조하고,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원판결들이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가 비공개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비밀지정이 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정보를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족되어져 소위 <실질비>에 해당하여야 한다. (각주 21: 현행 정보공개법은 형식비를 전제로 비공개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판례가 실질비를 전제로 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법개정시에는 실질비의 기준을 명문으로 비공개사유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sup>27)</sup>

실제로 토지조사부 결정으로 돌아가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알 권리” 도 헌법유보(제21조 제4항)와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알 권리” 는 아무에게도 달리 보호되고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특별법에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개념이 넓은 기준에서 일보 전진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알 권리” 침해라는 해악을 비교·형량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널리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밑줄친 부분의 서술은 정보공개청구법이 없이도 알 권리가 국민들에게 보장하였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입법자의 비밀지정이 - 그것이 법률로 되든 명령으로 되든 법령이 비공개대상을 특정하는 형식으로 되든 법령이 비공개대상의 기준과 유형 만을 추상적으로 정하는 형식으로 되든 - 헌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27)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25권, 115-141 (2006), 121쪽

## 보론 2: 행정권이 자유롭게 ‘타 법령에 의한 비공개지정’을 할 수 있는가?<sup>28)</sup>

2005년 5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중)<sup>29)</sup>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 회원 이호영 씨가 전년도 6월에 낸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목록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비밀로 지정되는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적법절차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 지정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열람 및 공개가 제한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3급 비밀로 지정되어 열람, 및 공개가 제한되어...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sup>30)</sup>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 의무 주체였던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해 3급비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인용하였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청 산하 행정기관으로서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기부사령부 등 공안관련기관으로부터 공식문서로 문건의 감정을 의뢰받으면 감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판결문)”는 일을 한다. 관련 공개청구 대상이 된 정보는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감정했던 해당 사건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감정 도서 및 감정자 등은 어떻게 되는지(‘이 사건정보’)에 대한 것이었다. 이 정보가 중요했던 이유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될 때 해당 서적이 이적표현물인지에 대한 감정을 공안문제연구소가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지정한 서적들의 목록과 지정한 이유들을 알아야 국가보안법 위반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재판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과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제4호, 제23조는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

28) 박경신, 정보공개청구법 "타 법령 비공개지정"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 제49호, 2015년

29)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05.5.31선고, 2004구합 17358 (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5누12956 판결에서 별다른 판시 없이 1심판결 인용됨)

30)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1998.1.1.] [법률 제5242호, 1996.12.31., 제정] 제7조 (비공개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급, 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의 분류로 되고, 해당 등급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에 열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위의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 되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불가하다.

그리고, 재판부는 어떻게 이 사건 정보가 위 조항들에 의거하여 어떻게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안문제연구소장은 1998.4.27 경찰대학공안문제연구소에서 1992년부터 1997.12.31까지 접수,감정한 도서 및 유인물목록을 III급 비밀로 지정하기 위한 보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대학 보안심사위원회는 1998.5.1 위와 같이 작성된 감정목록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 이적성 시비 및 창작,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을 야기시켜 사회문제로 된 가능성이 있고, 국내 대공기관에서 내사하고 있는 공작사항이 노출된 우려가 있으며, 목록에 수록된 자료 입수방법에 대한 적법 시비가 야기되어 보안수사 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정목록을 III급 비밀로 지정한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제7조제1항1호에 따른 타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지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인용한다.

법률이나 명령이 구체적으로 X라는 정보를 직접 지시하여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타법령’ 예외가 유효한지 아니면 법률이나 명령이 추상적인 기준과 범주만을 정해놓는 경우에도 역시 예외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 공안문제연구소 사건에서는 해당 명령인 보안규정은 해당 행정기관인 공안문제연구소가 비공개정보를 지정할 기준과 범주만을 정해놓았을 뿐 - 즉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제4호, 제23조는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급, 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의 분류로 되고, 해당 등급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에 열람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유형(예: “이적표현물 심사기록”)을 특정하여 비공개로 지정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타 법령’ 조항을 해석할 때 법률이나 법률에 의한 명령이 명시적으로 비밀유지를 정한 정보에만 한정하여 정보공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관련 법률이나 명령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행정결

정을 통해 비밀유지를 결정한 정보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예외가 확대해석할 경우, 위 조항은 정보공개법 전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이 사건 당시에는 7조1항1호)를 해석할 때 ‘법률과 명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비밀로 지정한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정보이든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으면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비밀로 지정하면 간단히 정보공개청구법의 적용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 즉, 제9조제1항제1호의 예외가 정보공개법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외가 원칙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 자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특정[될 것]’을 요구함은 물론 **(A) 그 법이 비공개 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하지 않거나 (B) 비공개되는 정보의 기준과 종류를 특정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1)</sup> 즉 비공개 여부에 대해 재량이 없을 정도로 특정 정보를 직접적으로 비공개지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특정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법에서 위임한 명령이 보안규정인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라는 비공개의 기준이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첫째 그 구체성에 있어서 미국법이 요구하는 “특정된 기준 (particular criteria), 특정된 유형(particular types)”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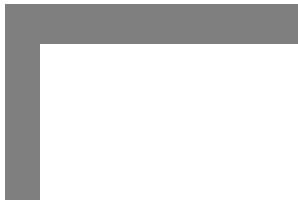
물론 비공개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그 추상적인 범주만을 정한 경우에도 사법부가 그 범주에 따라 비공개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면 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심사기록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제4호, 제23조 상의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실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공개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범주만을 정하는 경우 사법부가 이와 같이 해당 법령이 정한 범주에 따라 하위행정기관의 비공개지정에 대해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행정권에 의해 알 권리의 보호범위가 자의적으로 재단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제한법정주의를 위반한다.

31)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As Amended By Public Law No. 104-231, 110 Stat. 3048  
 (b)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matters that are-- . . . (3) specifically exempted from disclosure by statute (other than section 552b of this title), provided that such statute (A) requires that the matters be withheld from the public in such a manner as to leave no discretion on the issue, or (B) establishes particular criteria for withholding or refers to particular types of matters to be withheld;







토

론





## 토 론 1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위헌인 이유

오민애 변호사 | 헌법소원 대리인, 법무법인 율림

## 1. 들어가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함)의 모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이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 발제자들의 발제에 더하여, 지난해 8월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조의2, 제14조 제8호, 제34조 제10호와 각 규정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함.<sup>1)</sup>

위 각 조항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알권리, 표현의 자유, 생명권, 건강권, 학문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조문이 마련되어야 했을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이하에서는 개별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함.

1)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에서는 2020. 3. 9.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이하 토론문에서는 헌법소원청구 시 정리한 주장을 토대로 각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함. 위 헌법소원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직업병 피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 노무사, 변호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언론인, 산업보건 연구자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음.

## 2.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공개 금지 조항(법 제9조의2)

###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 문제되는 기본권

#### 1) 알권리

알권리는 의사형성을 위하여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수집·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제21조)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결정).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서 직업병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실태를 파악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알고자 하는 경우, 전자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될 수 있음.

#### 2)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업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직업활동의 장소, 기간, 형태, 수단 및 그 범위와 내용을 확정할 자유를 포함함(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결정).

위 조항은,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사실상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반도체 등 전자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성,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알리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직업병 피해를 예방하거나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보상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알리고자 하는 경우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

### 3)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는 연구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강의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대학의 자치 등이 포함됨.

사업장의 안전보건, 공중보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경우,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떤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해당 연구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강의를 하거나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게 됨.

### 4) 생명권, 건강권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sup>2)</sup>이고, 헌법은 질병으로부터의 생명·신체 보호 등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2) “협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협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결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등 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정보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과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경로 등을 알 수 없게 됨.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됨.

## 나. 명확성 원칙 위반

법률은 그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해짐(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결정. 특히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침해적 법률에서는 명확성 원칙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음.

한편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 명확성 원칙은 중요할 수밖에 없음.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결정), 알권리를 규제하는 입법에서도 엄격한 수준의 명확성 원칙이 요구됨.

제9조의2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전면적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알 권리’에 대한 침해적인 법률에 해당하고, 엄격한 수준의 명확성 원칙이 요구됨.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모두 원칙적으로 비공개할 것을 정하면서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① 국민들은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예측할 수 없고, ② 관련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 등은 자의적으로 비공개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됨. 특히 ‘국가핵심기술’ 지정 방식은 추상적, 전문적이고 그 내용도 광범위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는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sup>3)</sup>

위 조항은 단서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언제 공개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의 동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하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에 대한 판단의 자의성이 클 수밖에 없음.

##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음.

무엇이 보호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관련성이 있으면 모두 비공개대상이 될 경우,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나 공개되더라도 무방한 정보까지도 모두 보호 가치 있는 정보로 여겨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고 불법유출 내지 무단사용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 내지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됨.

### 2) 침해의 최소성

국가핵심기술의 운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정보만을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설령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예외

3) 일례로,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보고서 등의 보고서들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고 주장하여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음.

조항을 둔다면 위 조항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등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규정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함.

### 3) 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됨.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산업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sup>4)</sup>,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음. 알권리, 생명권 및 건강권이라는 보호법익과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더해 사업장에서는 정보 전체를 보유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보호 방법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서 보유하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 위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법익간의 불균형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음.

## 3.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제14조 제8호 및 제36조 제4항)

### 제14조(산업기술<sup>5)</sup>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함(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2항). 이때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산업, 경제,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제36조(벌칙)**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문제되는 기본권**

**1)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에 해당함.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피해의 원인과 현황을 밝히고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소송, 업무상 질병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청구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혹은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연구하면서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특별감독보고서를 포함한 자료를 취득한 경우, 해당 자료들은 모두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해당함.

위와 같은 경우, ‘제공 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을 예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sup>6)</sup>을 부담하고, 사용·공개

5) 이 조항에서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이는 수천 종에 달함.

6)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sup>7)</sup> 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

## 2) 직업수행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위 1)의 경우, 적법하게 취득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제공 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할 수 없어, 전자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성을 연구하고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을 자신의 직업수행의 내용으로 하는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

### 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

1) ·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데, 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②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 구성 요건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해야 함(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결정 등).

한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음. 위 조항은 형사처벌을 예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됨. 산업기술보호법상 처벌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함(헌법재판소

7)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20.2.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결정<sup>8)</sup>,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결정 등).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처벌 법규라고 하더라도 법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반면에, 동일한 규율효과를 가지면서도 그러한 불명확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나 다른 구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은 위헌의 의심을 받게 된다.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특히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그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하여야만 한다.

## 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 부분

포괄위임금지원칙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①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 내지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② '산업기술 관련 소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산업기술 침해 행위 관련 소송, 특정 산업기술의 유해성이 주요 쟁점이 되는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 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 그리고 '산업기술 관

8) [심판대상조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칙) ②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련 소송' 외의 적법한 경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3)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부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이미 수천 종에 이르는 데다가, 이를 '포함'한 '정보'의 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음.

### 4)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 부분

(해당 개념의 불명확성에 더하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절차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다투는 다른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5) '적법한 경로'에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포함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불문하고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묻게 되어 이에 대한 해석에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커짐.

##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정보, 공개하더라도 산업기술의 보호와 무관한 정보와 아무 구별 없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이기만 하면 사용·공개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음.

### 2) 침해의 최소성

본래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부정한 목적'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아왔음. 그러나 이

번에 신설된 위 조항은 목적, 방법을 불문하고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만 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함. 필요최소한으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를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산업기술보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 3) 법익의 균형성

목적이 무엇이든,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나면 처벌을 예정하고 있고, 비밀 유지를 전제로 알리는 것(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그 유족, 해당 사업장 인근 거주민 등에게)까지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해당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거나 해당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용·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면, 이를 통해 해당 산업기술을 보호해야한다는 공익은 그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움.

## 라.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결정,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결정 등). 그렇다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모든 행위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가져온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어야 함.

그러나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라도 이미 알려져 있거나 공개 여부가 산업기술보호와 무관한 경우도 있으며, 사용과 공개 행위가 곧바로 산업기술을 침해한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음.

## 4. 정보공개청구 등 업무수행자의 비밀유지의무(제34조 제10호 및 제36조 제6항)

###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 제36조(벌칙)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 문제되는 기본권

위 3. 가.의 경우와 동일함(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위 조항은 정보공개법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예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로)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임.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 ‘부득이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위 조항만으로는 ① ‘산업기술 관련 소송’이 무엇인지, ② 산업기술 관련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외의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지 및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③ 정보공개청구와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수행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함. 또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업기술’의 범위, ‘정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는 ① 산업기술보호법

에 근거한 직무를 수행한 자가, ② 해당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었음.)<sup>9)</sup> 이와 달리 위 조항은 해당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형사 처벌을 예정하면서도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정보, 공개하더라도 산업기술의 보호와 무관한 정보와 아무 구별 없이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처벌을 예정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일 수 없음.

### 2) 침해의 최소성

본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던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위 조항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산업기술 중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업무여야 하고, 문제되는 정보 또한 산업기술 중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업무에 해당하면 지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폭넓게 부담하도록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9)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법익의 균형성

정보공개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가 업무상 지득하는 정보가 해당 산업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움. 이에 비해 위 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은 그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제한됨.

### 라.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음.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할 정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어야 함. 그러나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라도 이미 알려져 있거나 공개 여부가 산업기술 보호와 무관한 경우도 있으며, 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된다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곧바로 해악을 초래할 만큼 그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한다는 점이 확인되지도 아니함.

## 5. 마치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의 다른 조항들과 그 내용, 취지를 비교해보면 위 각 조항들의 위헌성은 더욱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 위 개정조항들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성이 시정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이 본래 그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토 론 2

#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최상준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국산업보건학회 학술이사

## 1. 노동자/시민의 ‘유해 정보’에 대한 알 권리(Right-to-Know)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이윤 추구를 위해 영업비밀(trade secre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business)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영업비밀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면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안전하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시장에 팔지 말라  
No Data, No Market – EU REACH Slogans.”<sup>1)</sup>

2007년 시행된 유럽연합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는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하고 있다. ‘No Data, No Market’이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EU 내에서 화학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판매 할 수 없다는 예방 위주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제시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

1) [https://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reach/reach\\_en.htm](https://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reach/reach_en.htm)

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하고, 사용량이 많거나 유해성이 높은 특정물질(CMR, PBT, vPvB 등)<sup>2)</sup>은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관련 유해 위험 정보의 공개가 먼저라는 화학물질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배경으로 2013년에 'K-REACH'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한 건강보호를 위한 '유해물질법(Hazardous Products Act, HPA)과 사업주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유해물질정보심사법(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HMIRA)을 운영하고 있다. HPA는 법령의 총칭은 '작업장 사용, 취급, 저장 목적 유해물질의 판매 및 수입 금지에 관한 법률(An Act to prohibit the sale and importation of hazardous products that are intended for use, handling or storage in a work place)'이며, 사업주로 하여금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HMIRA는 MSDS 작성이 의무로 되어 있는 관리제품 또는 그 구성물질 중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항목의 정보공개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이윤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영업비밀로 정보 공개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보건복지부(Health Canada)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획득해야만 한다. 즉,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제품의 유통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전심사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MSDS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제품 내 화학물질 중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반도체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MSDS를 수집하여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중 39~43%의 제품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었고, 감광제(포토레지스트) 제품 중에서는 97~98%의 제품이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이 국

2) CMR(Carcinogenic, Mutagenic, toxic to Reproduction),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ity of reproduction), vPvB(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3) Sunju Kim, Chungsik Yoon, Seunghon Ham, Jihoon Park, Ohun Kwon, Donguk Park,

내의 유해물질 소통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캐나다의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받아들여 국내에서도 향후 MSDS 내 영업비밀로 공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도록 개정된 상태이다.

EU REACH와 국내 화평법, 캐나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 심사제도와 이를 받아들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보다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알 권리 확보가 우선되는 가치임이 국내외 제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 2.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개해선 안 된다?

###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 신설조항)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산기법의 내용 중 신설조항인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은 앞서 기술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제도화의 과정과 화학물질의 안전보건 제도의 최근 패러다임과 완전히 대치되는 조항이다.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영업비밀로서 정보 공개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보호될 가치가 있음을 기업이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기법의 신설조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개해서는 안 되며,

---

Sangjun Choi, Seungwon Kim, Kwonchul Ha & Won Kim (2018) Chemical use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24:3-4, 109-118, DOI: [10.1080/10773525.2018.1519957](https://doi.org/10.1080/10773525.2018.1519957)

정보공개를 원하는 자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산기법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등)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되고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이 12개 분야 69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제9조의 2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정하는가인데, 이미 삼성전자가 판정을 요청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해 2018년 4월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정보라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각종 업종의 제조 기술 공정을 대상으로 조사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도 모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로 판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는 비단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만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보건 관련 각종 사업장의 진단, 평가 정보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

표 1. 국가핵심기술 (법 제9조 관련,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분야	기술명
반도체 (8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디스플레이 (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전자 (3개)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철도 (9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제조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인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다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철강 (9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μm급) 제어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분야	기술명
조선 (7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 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원자력 (5개)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9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즘 연동 설계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쿼텀(Quantum) 리피터 기술
우주 (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생명공학 (3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분야	기술명
기계 (7개)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기술 (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 <sup>3</sup> 이하 등)
로봇 (3개)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

### 3.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작업환경측정)

-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2018년 산자부에서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과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일까?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가 산업보건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중 유해한 요인의 수준을 평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실제 측정은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산업위생 전문가로 구성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시 결과는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자대표 요구에 따라 측정기관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출되어 건강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농도를 평가한 내용이 핵심



이며, 이는 측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장 외부인(측정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근로자들에게 설명되어야 하는 정보, 즉 공개 가능한 정보이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인 아래 8대 기술에 해당되는 제조/설계/조립 등의 기술이 아닌 것이다.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만약 산자부의 판정처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속한다면, 국가핵심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수행되어온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Non-Sense” 이다.

이는 개정된 산기법의 9조2 항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애매모호한 내용과 이를 판정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취지와 조사 과정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위원회에서 ‘국가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현행 개정된 산기법의 개정 규정들이 폐기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산업보건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 4. 개정된 산기법이 산업보건에 미칠 영향

만약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 각종 안전보건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현재 국내의 취약한 안전보건정보 소통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첫째, 암(cancer), 생식독성과 같은 만성질환 피해자의 산재보상을 위해 직업 관련성 여부 판정을 위한 자료 접근권이 제한 될 수 있다.**

암, 생식독성 질환 등은 20-30년의 긴 기간 동안 장기간 누적 노출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퇴직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한 사업장의 과거 유해인자 노출 이력을 확인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유해위험물질 보호령(GefStoff)’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노출 종료 후 40년간 보존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된 기록의 발췌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 의사, 관할 행정관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장 내 관계자,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퇴직 후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당시의 정보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정량적 노출평가 자료로서는 유일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경우 현재 사업주 보존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 과거 자료를 요청해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질병 피해자가 자신의 노출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정보를 요청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사업주는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기관에서 K2B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 송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로 해석될 경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요청하더라도 공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업장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180여개의 작업환경측정기관들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

에서 사업장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사업장 내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노출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될수록 정확한 노출평가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과거 근무했던 퇴직자가 암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특히 사업장에서의 정보 제공이 제한될 경우 정확한 역학조사는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정보 제공이 소극적이거나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결과를 이용한 과거 노출수준 평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기법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해당될 경우 개별 사업주들도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된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 작업환경측정이나 역학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위험 관련 정보들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구실로 합법적으로 은폐되어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보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안전보건 정보 분석을 통한 국가 정책 수립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국가가 필요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안전보건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필요하다. 어떤 업종과 직업, 공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국가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을 국가노출감시체계라고 하며,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자국내 수집 가능한 각 사업장의 조사 자료들을 집계하여 자국의 노출감시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노출감시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1945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 조사 자료들을 국가 통계로 수집 분석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자료를 비롯하여 특수건강진단 자료, 안전보건 진단 자료 등이 안전보건공단의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산재예방 정책이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런데 개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 규정(제9조의

2)이 시행될 경우 이를 근거로 국가노출감시체계 구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결과의 공개 활동 등 공익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 5. 맺음말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제도는 보팔 참사, 가슴기 살균제 사건, 메탄올 중독에 의한 실명 사건 등.. 많은 피해자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교훈의 산물이며, 기업의 경제활동 및 국가 경제 발전 등 그 어떠한 명분보다도 노동자/시민의 생명 존중과 건강 보호의 가치가 최 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령 국가핵심기술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내 기업 보호와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산기법의 본래 취지를 특정 기업의 불량한(?)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활용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될 것이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족쇄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끝).

## 토 론 3

---

# 산업기술보호법과 법개정에 대한 의견

김창희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과장



## 토 론 4

---

# 산업기술보호법과 법개정에 대한 의견

김용태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 부 록





## 부 록 1

---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9. 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1. 개정이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의결('19.6.20)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사항을 알리고,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 및 해외인수합병의 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국가핵심기술」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

나. 국가핵심기술 법령상 선정기준 명시(안 제3조)

- 국방·치안, 해당 기술분야, 관련산업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핵심 기술 지정토록 선정기준 구체화

다. 국가핵심기술 목록 개정(별표)

- 기업·단체 수요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신규지정 기술 7개, 현행 기술 범위의 변경 5개, 현행기술의 해제 2개 등을 반영한 기술목록 개정

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5조)

-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기술의 매입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등 명시

마. 해외인수합병의 신고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6조)

-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받은 자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바.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승인·신고,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청자료

의 접수 및 검토 절차 명시(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2, 제18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라. 기 타 :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국가핵심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

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b>제1조(목적)</b>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b>제2조(정의)</b>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li> <li>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li> <li>3. “해외인수·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li> <li>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li> <li>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li> </ol>

〈신 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p>〈신 설〉</p>	<p><b>제6조(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b>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li> <li>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li> <li>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li> </ol>
<p>〈신 설〉</p>	<p><b>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b>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p> <p>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p>

## 국가핵심기술 신규 대비표

### 1. 신규지정 : 7개 대상 기술

분야	국가핵심기술명
반도체 (1)	대구경(300mm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전기전자 (2)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 (1)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철강 (2)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 (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기계 (1)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속도(jerk) 1.2 m/s <sup>3</sup> 이하 등)

### 2. 변경 : 5개 대상 기술

분야	현행	개정
전기전자 (1)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파우치형 250Wh/kg 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 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자동차·철도 (2)	<b>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공급시스템</b> 설계 및 제조기술	<b>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b> 설계 및 제조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및 라이더 시스템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분야	현행	개정
조선 (1)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5m 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정보통신 (1)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 3. 해제 : 2개 대상 기술

분야	국가핵심기술명
자동차 철도 (1)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정보통신 (1)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 2018.1.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

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2018. 1. 15.)는 폐지한다.



**[별표]**

**국가핵심기술(법 제9조 관련)**

분 야	기술명
반도체 (8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디스플레이 (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전자 (3개)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철도 (9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 (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제조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분 야	기술명
철강 (9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 $\mu$ m급) 제어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조선 (7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원자력 (5개)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분 야	기술명
정보통신 (9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즘 연동 설계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 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 버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쿼텀(Quantum) 리피터 기술
우주 (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생명공학 (3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 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기계 (7개)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기술 (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 <sup>3</sup> 이하 등)

분 야	기술명
로봇 (3개)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 부 록 2

# 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의 범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5. 1. 28.>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 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가~자 항목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나'의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임.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의 범위는 자료집에 전체를 싣기 어려울 정도로 넓음. 이에 여기에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같음하겠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bitly.kr/s9dnSx0p>)













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발간일 2020. 11. 16.  
문 의 [sharps@hanmail.net](mailto:sharps@hanmail.net) 02-3496-5067